

부속서 13-가

브루나이다루살람에 대한

제13.3조(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) 및 제13.4조(협력)의 적용

1. 이 협정의 발효일에 브루나이다루살람이 제13.3조(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)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,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준수한다.
2. 제13.3조(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)의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그리고 제13.4조(협력)는 브루나이다루살람이 제13.3조(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)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대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내에 브루나이다루살람에 대하여 적용된다.
3. 3년의 경과기간 동안, 브루나이다루살람은 3년 기간의 종료 시까지 자신이 제13.3조(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) 및 제13.4조(협력)를 준수함을 보장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그러한 기간의 종료 전에 그러한 조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4. 어떠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,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기간의 종료 시까지 제13.3조(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) 및 제13.4조(협력)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는 데 대한 자신의 진전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알린다.